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69호서식]

# 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(검사: )

제 목: 구속영장 신청서(현행범인)

다음 사람에 대한 0000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(구속장소)에 구속하려 하니 0000.00.00.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피의자 | 성 명 | |
|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직 업 | |
| | 주 거 | |
| 변 호 인 | | |
| 체포한 일시·장소 | | |
| 인치한 일시·장소 | | |
| 구금한 일시·장소 | | |
|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| | |
| 필요적 고려사항 | | [ ] 범죄의 중대성 [ ] 재범의 위험성<br>[ ] 피해자·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<br>[ ] 기타 사유 |
|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| | |
|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| | |
| 비 고 | | |

○ ○ 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